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976

발의연월일: 2022. 6. 15.

발 의 자: 권칠승·김의겸·김정호

김철민 · 김태년 · 김회재

도종환 · 박광온 · 소병훈

이용우 · 이원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기술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금융회사 및 정부 등의 출연 금으로 조성되며, 출연요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출연요율에 관한 하위법령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률 위임체계를 간략히 하도록 하는 등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 본문 중 "대통령령"을 "연율(年律)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기본재산의 조성) ①・②	제13조(기본재산의 조성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융자금	③
에 대하여 <u>대통령령</u> 으로 정하	<u>연율(</u> 年律) 1천분의 <u>3</u>
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	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
출연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조	중소벤처기업부령
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	
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	,
는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	
다.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